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3.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169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한윤수 의원 대표발의(18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한윤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체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장을 마련하여 문화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3조)
- 도시농업 행사와 연계한 우수사례 등 아이디어 발굴(안 제4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조례안 예고 : 5일 이상 추진(2023.6.2.~6.1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1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도시농업 등의 육성 및 지원), 안 제4조(아이디어 발굴 등),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일부 추가 및 변경하고, 현행 조례 조문 중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삭제하려는 것이며, 이외에 현행 제7조(위원회의 구성)는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현행 제14조 및 제15조는 제7조 및 제8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임.

조문	개요	주요내용	개정사항
1	목적	현행과 같음	변경 없음
2	정의	4호, “스마트팜” 추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접목 지능형 농장	<개정> 제2조제4호 추가
3	도시농업 등의 육성 및 지원	(제1항) 9개호에서 11개호로 확대 (제2항) 개인이나 단체 지원 근거 신설 (제3항)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개정> 추가 및 변경
4	우수사례 발굴 등	제목을 “아이디어 발굴 등”으로 변경하고 도시농업 축제, 콘테스트, 박람회 등 추가하고 아이디어 발굴 사항 등을 반영함	<개정> 추가 및 변경
5	위원회의 설치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체화 6가지 현행 제6조(위원회의 기능)을 변경	<개정> 조문 순서 및 제목 변경
6	위원회의 기능	현행 제6조 삭제	<삭제>
7	위원회의 구성	현행 제7조를 안 제6조로 변경 제목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위원 중 구의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하고 3개항 신설	<개정> 조문 순서 변경 및 내용 추가
8	위원의 임기	신설한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4·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	<삭제>
9	위원의 해촉	신설한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6항 적용	<삭제>
10	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신설한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6항 적용	<삭제>
11	위원장의 직무	신설한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6항 적용	<삭제>
12	회의 등	신설한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6항 적용	<삭제>
13	간사	신설한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5항 적용	<삭제>
14	수당 등	개정안 제7조로 변경	<개정>
15	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로 변경	<개정>
부칙	부칙	현행과 같음	변경 없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다수의 조문을 추가 및 변경하면서 삭제하여 실질적으로는 전부개정조례안에 가깝게 개정안을 발의한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민이 관심이 높은 도시농업 관련 도시텃밭과 텃밭 내 스마트팜 운영 그리고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고, 그동안 구체적이지 않은 도시농업 참가자들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료 등 도시농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3조제2항에 마련하였고, 이에 덧붙여 조례 내용의 과반에 해당하는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 따를 것을 개정된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6항에 규정하여 조례의 간결함을 추구하고 있음.
- 특히, 안 제3조제1항제9호와 안 제4조에 도시농업 축제, 콘테스트, 박람회 등의 행사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이와 함께 우수사례 및 제안 등을 통한 시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협동적인 도시농업을 통한 강남구 공동체 형성 활성화를 추구하려는 발전적 정책 의도를 담아내고 있음.
- 비용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면, 현재 지역경제과는 도시텃밭 내 <스마트팜 운영> 예산으로 135,187천원 편성 집행하고 있고, <친환경 힐링텃밭 운영> 154,168천원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안으로 제2도시텃밭 조성을 위해 226,406천원이 증가한 380,574천원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각종 행사 추진을 반영하고 상자텃밭 보급을 활성화하려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규모에 따라서는 최대 1억원 이내의 예산이 추가될 수 있음.
- 예컨대, 어르신들을 위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급용 상자텃밭 상자, 각종 비료, 소형 호미 등 농기구, 행사운영에 필요한 권역별 및 도시텃밭용 행사비,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소요비용 등이 될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도시농업이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향후 집행기관이 제2도시텃밭 조성을 기획하고 있어 더더욱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운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
----------	-----

발의연월일: 2023. 6. 1.

발의자: 한운수·박다미·복진경·
이동호·노애자·강을석·
전인수·이호귀·김광심·
김현정·손민기·오온누리·
안지연·이도희·우종혁 의원
(이상15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체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장을 마련하여 문화생태도시 구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3조)
- 나. 도시농업 행사와 연계한 우수사례 등 아이디어 발굴(안 제4조)
-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회복 등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공원, 녹지 및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하기 위하여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4. “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제3조(도시농업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
2.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3.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
6.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친환경 상토 및 친환경 농자재 보급사업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생산자 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도시농업 축제, 콘테스트, 박람회 등 행사 개최
10.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도시농업 및 유기식품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아이디어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고 확산·전파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축제, 콘테스트, 박람회 등의 행사를 통해 도시

농업 우수사례 및 제안 등 구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의 활성화 지원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5. 도시농업 관련 교육
6. 그 밖의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
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시농업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u></p>
<p>제3조(도시농업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상자텃밭의 보급 사업</u></p> <p>3. ~ 6. (생략)</p> <p>7.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u>친환경상토</u> 및 친환경 <u>농자재</u></p> <p>8. (생략)</p> <p><u><신 설></u></p>	<p>제3조(도시농업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 ----- <u>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 사업을 육성하거나 -----</u>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u></p> <p>3. ~ 6. (현행과 같음)</p> <p>7. ----- <u>친환경 상토 ----- 농자재 보급사업</u></p> <p>8. (현행과 같음)</p> <p>9. <u>도시농업 축제, 콘테스트, 박람회 등 행사 개최</u></p>

<신 설>

9.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4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고, 확산·전파하기 위하여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개발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10.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 사업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아이디어 발굴 등) -----
----- 촉진하고 ----- 도시농업 축제, 콘테스트, 박람회 등의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 우수사례 및 제안 등 구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개인이나 단체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
- 다음 각호의 ----- 위하여 -----.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의 활성화 지원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
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의 활
성화 지원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
보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
책 개발
5. 도시농업 관련 교육
6. 그 밖의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
보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
책 개발

5. 도시농업 관련 교육

6. 그 밖의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1명

2.·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명

2.·3.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삭제>

<삭제>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

<삭 제>

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삭 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

<삭 제>

<삭 제>

다.

제14조 · 제15조 (생략)

제7조 · 제8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